

최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 영향이 큰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하급심 재판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외국 선진국들처럼 재판 중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 주요 선진국들은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州) 법원에서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고 있고, 연방대법원은 2010년부터 재판중계 방송 대신 모든 사건에 대한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992년부터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된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2011년 9월 법무부의 법 개정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판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2009년 10월 1일 신설된 영국 대법원은 일정한 규칙(법원 소유의 장비로 녹화 및 녹음, 모든 녹화물을 오락 프로그램, 광고 등을 제외한 뉴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사용 가능. 판사·변호인 등의 법정 내 사적 대화 녹음·촬영 금지. 공개되지 않은 재판관 자리 의 서류 클로즈업 금지. 방청객 클로즈업 금지 등) 하에 생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1년부터, 뉴질랜드는 1999년부터 재판중계방송이 허용되고 있고, 캐나다는 1981년부터 대법원의 재판중계 방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영미법계의 국가들과 달리 프랑스는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음성 및 영상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재판중의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독일 역시 녹음이나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법원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만이 제한적(당사자의 출석 확인 때까지, 선고 시)으로 재판에 대한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해 10월 법률 개정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특수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TV 중계방송과 녹음·녹화를 방영해 공개하도록 허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학문적·역사적 목적을 위해 심리 및 판결 선고의 녹음·녹화를 법원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심리 진행 중 녹음·촬영은 물론 재판중계방송도 당사자들 간 합의가 있거나 현저히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는 때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원칙적으로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등 대륙법계의 국가들 역시 점차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올 8월에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등 공익이 큰 중대사건 재판의 중계방송에 응답자의 84%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올 6월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과정 일부·전부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응답한 판사는 67.82%(687명), 재판중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2.1%였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판결 선고만큼은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은 이보다 더 많은 73.35%(743

명)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들이나 재판을 직접 주재하는 판사들 역시 재판중계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렇듯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다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생활보장·초상권 등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자께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보장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장이라는 이익들을 비교衡量하여 후자의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나 사법목적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고 하신 말씀에 저 역시 전적으로 같은 의견임을 밝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발표자의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12페이지에서, “대법원 규칙이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의 행위에 있어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실현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촬영 등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재판장에게 촬영 등의 행위에 관하여 제한 없는 허가권을 부여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조직법에서 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 등 더 큰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의하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사생활비밀, 초상권 등의 권리는 재판장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판장의 중계방송 허가에 대한 아무런 제약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을 ‘피고인의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 하에서만

재판장이 재판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오히려 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하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